

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한신 의원 발의)

2024. 12.

서울아리수본부

- 서울아리수본부장 한영희입니다.
- 환경수자원위원회 한 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79호 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「수도법」 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, 대규모 주택 단지 및 산업시설 등 사업 시행자 및 그 이외 시설 등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-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수도시설 자산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 정립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,
-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시민 급수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,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